

#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

발의자 : 오지훈 의원

발의일 : 2021. 11.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4조)
- 나.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9조)
- 다. 현지활동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4조)

## 3. 검토의견

- 본 제정 규칙안은  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 '22. 1. 13. 시행)에 따라 의회 소속 지방 공무원의 의정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.